

의안번호	제 82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258 회)

**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민경환 의원 외 12
발의연월일	2007년 2월 23일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2월 23일

발 의 자 : 민경환의원외 12

□ 제안이유

-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학생을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대학생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장학생 수혜대상자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(안 제1조)
- 나.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함(안 제3조).
- 다. 장학생 선정 시 보고체계를 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”에서 “30일 이내에 도지사”로 함(안 제5조).
- 라. 장학생의 정원을 시·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“7%”에서 “5퍼센트”로 축소 조정(안 제6조)
- 마.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,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정함(안 제7조).

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불 임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불 임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(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중 “현재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”를 “현직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”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 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.

제4조중 “새마을운동중앙회”를 “충청북도새마을회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”를 “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”로 한다.

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(종전의 본문)중 “7%”를 “5퍼센트”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1: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되, 적격

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,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중 “다음 각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하고, 제1항제2호를 삭제하며,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		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 (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 (새마을 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	
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.	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.			
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재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	1.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·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			
2. ~ 3. (생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			

현행	개정안
<p>〈신설〉</p> <p>제4(추천)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중앙회 시·군 지회장 또는 시·군 새마을회장(이하 “시·군지회”라 한다)과 시장·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로 한다)회장이 도지사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 다만, 시·군지회장은 시·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선정) 도 새마을회장이 시·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②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.</p> <p>제4조(추천)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충청북도새마을회 시·군 지회장 또는 시·군 새마을회장(이하 “시·군지회”라 한다)과 시장·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충청북도새마을회(이하 “도 새마을회”로 한다)회장이 도지사과 협의하여 선정한다. 다만, 시·군지회장은 시·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,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선정) 도 새마을회장이 시·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장학생의 정원) 장학생은 연간 시·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%로 한다.</p>	<p>제6조(장학생의 정원) ①장학생은 연간 시·군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로 한다.</p>
<p>〈신설〉</p>	<p>②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1:1로 유지되도록 선발하</p>
	<p>되,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</p>
<p>제7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</p>	<p>제7조(장학금액) 장학생에게 지급하</p>
<p>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한다.</p>	<p>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</p>
<p>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납금</p>	<p>며,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</p>
<p>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</p>	<p>금 전액(최고금액)의 120퍼센트로</p>
<p>학교 의무교육 지역은 실제의 납</p>	<p>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</p>
<p>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</p>	<p>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으로</p>	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장학생으로</p>
<p>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</p>	<p>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</p>
<p>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</p>	<p>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</p>
<p>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</p>	<p>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</p>
<p>한다.</p>	<p>급하여야 한다.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2.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</p>	<p>2. (삭제)</p>
<p>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재력이</p>	<p>2. -----</p>
<p>생긴 때</p>	<p>3. -----</p>
<p>3. -----</p>	<p>4. -----</p>
<p>4. -----</p>	<p>4. -----</p>
<p>5. -----</p>	<p>5. -----</p>

관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3조 (보조금의 교부)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시·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·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지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.